

1. 개정이유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, 지원 철회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(안 제2조 개정)

- 1)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포함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현행 서식에는 신청 대상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 중 일부(혼인증명서, 출생증명서)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2)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. 또한, 신청 대상별 첨부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3) 신청인의 지원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,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식 정비(안 제4조 개정)

- 1)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포함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

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가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
서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2)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
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.

3)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가 지원대상자로
선정된 후 철회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 연도 6월 30까지
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	
	주소	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※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사할린동포 (기존 영주귀국 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)	성명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사망일자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만 작성)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,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)	
	주소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)	

※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.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	
	주소	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의 관계 [] 자녀 [] 직계비속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	
	주소	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의 관계 [] 자녀 [] 직계비속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	
	주소	전자우편 주소	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	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할린동포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,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.
다만,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재외동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공통 제출서류 :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(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문서일 것)	수수료 없음
	2. 사할린동포인 경우 : 출생증명서, 제적등본, 강제동원 증명서, 박노학 명부, 영주귀국 확인서, 일시모국방문 확인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
	3. 동반가족인 경우 :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	
	1) 가목 해당자 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자녀·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
2) 나목 해당자 : 사망한 사람이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증명서 등 해당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,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	
3) 다목 해당자 :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할린동포에게 자녀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	

국내 신청 처리절차



국외 신청 처리절차

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 연도 25일 이내
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사할린동포 []	성명	생년월일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주소
	지원 철회 사유	

※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사할린동포 (기존 영주귀국 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)	성명	생년월일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,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)	
	주소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)	

※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.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성명	생년월일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주소
	지원 철회 사유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성명	생년월일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주소
	지원 철회 사유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성명	생년월일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주소
	지원 철회 사유	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주 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철회합니다.

년 월 일

사할린동포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동반가족 (서명 또는 인)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,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.
다만,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재외동포청장 귀하